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관리 및 이용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안

(송석준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4225
----------	-------

발의연월일 : 2025. 11. 13.

발 의 자 : 송석준·고동진·박상웅
조경태·김성원·김형동
이종배·박덕흠·김선교
곽규택·나경원 의원
(11인)

제안이유

최근 5년간('17~'21년)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는 15배나 폭증하고, 사망자수도 5배나 늘어나고 있음.

하지만 한국소비자원이 실시한 전동킥보드 안전실태조사에 따르면 전동킥보드 보호장치 착용률은 3.1%에 불과하는 등 전동킥보드 이용자의 안전관리가 사실상 방치되고 있는 실정임.

뿐만 아니라 무단 주·정차 전동킥보드로 인한 보행자와 차량 안전사고 발생위험도 매우 높은 상황이며, 전동킥보드 안전관련 부품 파손 및 오작동 등 전동킥보드 이용에 적합하지 않은 불량 제품도 속출하고 있고, 전동킥보드 대여사업자 및 제조·판매업자 등의 책임보험가입이 제대로 되지 않아 피해보장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전동킥보드 이용자 및 이용환경 안전강화, 전동킥보드 대여사

업자의 준수사항 규정, 사고피해 보장 등 안전하고 편리한 이용환경을 조성하고, 동시에 이용시설의 확충 및 지원 등을 통해 새로운 교통수단으로서의 지위를 확립하기 위한 체계적인 법제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활성화를 위한 종합 시책을 마련하도록 함(안 제3조).

나. 지자체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찰의 의견을 들어 개인형이동장치 이용 활성화 및 관리계획을 5년마다 수립함(안 제5조).

다. 개인형 이동장치 도로를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그 노선을 지정·고시 또는 변경·폐지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라. 개인형 이동장치의 통행구간을 제한하고, 거치구역을 지정·운영·제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행자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제11조, 제12조).

마. 지자체장은 관할 경찰서와 협의하여 개인형 이동장치의 충전소 및 수리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바. 국토교통부장관은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정책개발 등을 위하여 통계를 주기적으로 작성·공표하도록 하고,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계 기관의 장 등이 보유한 자료나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

사.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단방치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안전을 위하여 이동·보관·매각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

아.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자에게 2인 이상이 운전하는 행위 금지, 안전모와 같은 인명보호장구의 착용의무, 개인형 이동장치의 통행제한구역 및 거치제한구역에서 운행하지 못하게 하는 의무 및 16세 미만인 아동이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함(안 제20조).

자.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요건을 규정하고, 안전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도록 개인형 이동장치를 개조한 자와 안전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한 개인형 이동장치를 개인형 이동장치 도로에서 운행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21조).

차. 초등학교,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통행방법·준수사항·관리방법 등 이용과 관련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함(안 제22조).

카.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자 및 제조·판매업자 등은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한 타인의 생명·신체나 재산상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해 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함(안 제23조).

타. 대여사업을 운영하려는 자에게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도록 하고, 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요건, 대여사업의 약관, 대여사업자의 준수사항 등을 규정함(안 제24조, 제25조, 제27

조, 제29조 등).

과.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자에게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운전 자격을 확인하게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운전자격확인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함(안 제29조제6항 및 제7항).

하.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자가 국·공유지에 허가를 받아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국·공유지 사용료 등을 감면받을 수 있게 함(안 제31조).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관리 및 이용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는 사람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개인형 이동장치 사업에 관한 질서를 확립하여 국민의 교통편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인형 이동장치”란 전기 동력을 사용하여 승차인원이 1인인 근거리 이동장치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장치를 말한다.
2.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시설”이란 개인형 이동장치 도로, 개인형 이동장치 거치구역, 개인형 이동장치 거치장치, 개인형 이동장치 충전소와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과 관련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도로관리청”이란 다음 각 목에 따른 도로를 관리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말한다.
 - 가. 「도로법」에 따른 도로관리청
 - 나.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라 농어촌도로의 정비를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다. 개인형 이동장치 도로의 노선을 지정·고시한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중앙행정기관의 장

라.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자전거도
로의 노선을 지정·고시한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중앙행정기관
의 장

4.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이란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유
상으로 개인형 이동장치를 대여하는 사업을 말한다.

5. “공영 개인형 이동장치 운영사업”이란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소유 또는 관리하는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
용자로부터 사용료를 받고 대여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개인형 이
동장치 이용시설을 정비하고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안전과 개
인형 이동장치가 일반 국민에게 미치는 불안전 요인을 저감하는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활성화 및 안전관리를 위한 종합적인 시책
을 마련하여 성실히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개인형 이동장치에 적용되는 특례
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2장 개인형 이동장치 및 이용시설의 관리

제5조(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활성화 및 관리 계획의 수립) ① 특별

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와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경찰청장·경찰서장 또는 지방국토관리청장 등의 의견을 들어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활성화 및 관리계획(이하 “활성화 및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활성화 및 관리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활성화 및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시설의 건설 및 관리·정비의 기본방향
2.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 및 보행자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방안
3. 연도별 활성화 및 관리 시행계획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활성화 및 관리계획을 수립할 때 인접 지방자치단체의 개인형 이동장치 도로 또는 자전거도로와 연계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접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가 읍·면 지역의 국도·지방도에 활성화 및 관리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도로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활성화 및 관리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

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수립한 활성화 및 관리계획이 시·도지사가 수립한 활성화 및 관리계획에 부합하지 아니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이 수립한 활성화 및 관리계획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활성화 및 관리계획을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에 통합하여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립한 활성화 및 관리계획을 공고하고 일반인이 해당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및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군·구와 자치구가 아닌 구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활성화 및 관리계획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6조(도시·군계획 등의 반영) 행정기관의 장 또는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및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시설의 확충계획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군계획
2.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

3.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계획,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제7조(개인형 이동장치 도로의 노선 지정 등)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도로를 개인형 이동장치 도로로 지정할 수 있다.

1.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자전거도로

2.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도로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 도로를 설치하였거나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그 노선을 지정·고시하여야 한다. 지정·고시된 개인형 이동장치 도로의 노선을 변경하거나 폐지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노선이 지정되어 관리되는 개인형 이동장치 도로는 해당 도로관리청에서 개인형 이동장치의 통행이 제한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개인형 이동장치 도로의 구조·시설기준 등) ① 개인형 이동장치 도로를 관리하는 관리청은 개인형 이동장치 도로의 구조 및 시설, 도로의 안전점검, 보수 및 유지·관리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개인형 이동장치 도로의 구조 및 시설, 도로의 안전점검, 보수 및 유지·관리를 위한 구체적인 기준은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제9조(개인형 이동장치 통행제한구간의 지정) ① 도로관리청은 도로에

서 안전하고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도로의 일정구간을 지정하여 개인형 이동장치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② 도로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의 통행금지 또는 제한구간을 지정하거나 지정을 변경 내지 해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의견을 들어야 한다.

1. 도로관리청이 국토교통부장관인 경우: 경찰청장
2. 도로관리청이 시·도지사(특별자치시장은 제외한다)인 경우: 관할 지방경찰청장
3. 도로관리청이 특별자치시장, 시장·군수·구청장인 경우: 관할 경찰서장

③ 도로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의 통행금지 또는 제한구간을 지정할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그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④ 도로관리청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통행금지 또는 제한구간의 입구나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개인형 이동장치의 통행이 금지되거나 제한된다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안전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10조(개인형 이동장치 도로의 안전 확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통행에 방해가 될 물건 등을 개인형 이동장치 도로에 방치하지 아니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제11조(개인형 이동장치 거치구역의 지정·운영) ① 「주차장법」 제7조에 따라 노상주차장을 설치한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및 노상주차장을 설치하려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 거치구역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주차장법」 제12조 및 제12조의3에 따라 노외주차장을 설치한 자 및 노외주차장을 설치하려는 자가 노외주차장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 거치구역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외주차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주차장법」 제19조에 따른 시설물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려는 자와 「주택법」 제35조에 따른 주택건설기준등에 따라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사업주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 거치구역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개인형 이동장치 거치구역의 관리·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2조(개인형 이동장치 거치제한구역의 지정)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개인형 이동장치를 주차 또는 거치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1. 개인형 이동장치의 주차나 거치가 차마나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

을 주는 경우

2. 개인형 이동장치의 주차나 거치가 차마나 보행자의 안전에 문제를 야기할 경우

3. 개인형 이동장치의 주차나 거치가 인지 소유자의 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영업의 자유를 침해할 경우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의 주차 또는 거치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그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주차 또는 거치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구역의 입구나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개인형 이동장치의 주차 또는 거치가 금지되거나 제한된다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안전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 또는 거치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구역의 관리·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3조(대중교통 연계를 위한 개인형 이동장치 거치장치 설치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자가 개인형 이동장치를 휴대하고 대중교통수단(「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나목부터 라목까지에 따른 도시철도차량, 철도차

량, 여객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대중교통수단을 운영하는 자에게 그 대중교통수단 내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고정시킬 수 있는 개인형 이동장치 거치장치의 설치·운영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자가 손쉽게 대중교통과 연계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대중교통시설(「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대중교통시설을 말한다)에 개인형 이동장치 거치구역을 지정 또는 개인형 이동장치 거치장치를 설치하거나 대중교통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에게 개인형 이동장치 거치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치구역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 거치장치를 설치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공영 개인형 이동장치 운영사업)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공영 개인형 이동장치 운영사업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영 개인형 이동장치 운영사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5조(개인형 이동장치의 충전소·수리센터 설치 등)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경찰서장과 협의를 통하여 개인형

이동장치 거치구역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개인형 이동장치 충전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주민자치센터 또는 종합사회복지관 등에 개인형 이동장치 수리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개인형 이동장치 충전소 및 수리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6조(개인형 이동장치 인명보호장구 보급사업 등)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증진하기 위하여 「도로교통법」 제50조제4항에 따른 인명보호장구를 개인형 이동장치 보호장구 보급사업으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개인형 이동장치 보호장구 보급사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7조(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통계의 작성·공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활성화 및 안전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개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통계를 주기적으로 작성·공표하여야 한다.

1. 개인형 이동장치 도로의 노선 현황 등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시설의 현황
2.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자의 일반현황 및 대여사업용 개인형 이동장치의 등록현황 등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 현황

3. 공영 개인형 이동장치 운영사업 현황

4.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활성화 및 안전한 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도로관리청 등 관계 기관의 장이나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자에게 필요한 자료나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이나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통계의 작성 주기·방법과 공표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18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① 국가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의 안전성과 편의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시설의 설치 및 정비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보조할 수 있다.

②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는 국가가 제1항에 따라 시·군·구에 비용을 보조하는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군·구에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③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상 안전 확보 및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시설 여건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3장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방법 등

제19조(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단방치 금지) ① 누구든지 도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시설, 그 밖의 공공장소 등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무단으로 방치하거나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을 위반한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동·보관·매각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20조(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준수사항) ①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따라야 한다.

1. 제2조제1호 및 「도로교통법」 제50조제10항에 따른 승차인원을 초과하여 동승자를 태우고 2인 이상이 운전하는 행위 금지
2. 제7조에 따른 개인형 이동장치 도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전거도로, 「도로법」에 따른 도로에서의 노상 주차 및 거치 금지
3. 제9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개인형 이동장치 통행제한구간에서의 통행 금지
4. 제12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개인형 이동장치 거치제한구역에서의 거치 금지
5. 「도로교통법」 제13조부터 제42조까지에 따른 차마의 통행방법

의 준수

6. 「도로교통법」 제43조부터 제56조까지에 따른 운전자 의무 준수

② 16세 미만인 아동의 보호자는 해당 아동이 도로에서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그 밖에 보행자 보호 및 교통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21조(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요건) ① 개인형 이동장치는 구조와 성능 등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② 누구든지 개인형 이동장치를 안전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도록 개조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안전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한 개인형 이동장치를 「도로교통법」 제2조제1호 각 목의 도로 및 개인형 이동장치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2조(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교육 등) ① 초·중·고등학교의 장은 「초·중등교육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과 관련된 교통안전교육을 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주민에 대하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과 관련한 교통안전교육을 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의 장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과 관련한 교통안전교육을 시행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교통안전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의 포함되어야 한다.

1. 개인형 이동장치 통행원칙 및 통행방법
2.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 관련 교통법규
3. 개인형 이동장치의 점검 및 관리방법
4. 그 밖에 안전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과 관련된 교통안전교육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교통안전교육과 함께 실시할 수 있다.

⑥ 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기관의 장이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과 관련한 교통안전교육을 시행하는 경우 국토교통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교육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3조(책임보험 가입의무 등) ①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자 및 제조·판매업자 등은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한 타인의 생명·신체나 재산상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 등의 가입 주체, 종류, 보상 한도액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장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

제24조(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의 등록) ①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을 운영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을 등록할 수 없다. 법인의 경우 그 임원 중에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의 등록이 취소된 후 그 취소일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다만, 법인의 임원 중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3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교체임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實刑)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형(刑)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③ 제1항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을 등록한 자가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5조(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의 등록기준) ①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을 운영하려는 자는 주사무소 또는 영업소를 설치하고 주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위치하고 있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을 등록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사항을 갖추고 등록하여야 한다.

1.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의 운영지역, 운영 대수, 영업소 등 관련 시설의 설치 및 운영계획
2. 대여사업용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 및 다른 교통 이용자의 안전성 및 편의성 확보방안
3. 대여사업에 이용되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요건 및 기기 안전관리 방안
4.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의 보험가입
5. 개인형 이동장치 활성화 정책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대여사업 운영관련 통계 등 제출
6.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26조(대여사업용 개인형 이동장치의 요건)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개인형 이동장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여야 한다.

1. 제2조에 따른 개인형 이동장치로서 제21조에서 규정한 안전요건에 적합할 것

2.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 이용자의 안전 등을 위하여 국토교통
부령으로 정한 요건에 적합할 것

제27조(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의 약관) ① 제24조제1항에 따라 개
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을 등록한 자(이하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
업자”라 한다)는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대여
약관을 정하여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대여약관을 변경하
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대여약관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
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의 표준대여약관을
고시할 수 있다.

④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시·도지사가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
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
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
으로 본다.

제28조(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의 개선명령) 시·도지사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보호, 안전운행의 확보, 서비스의 향상과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의 적절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자의 주사무소, 영업소 및 그 밖에 필요한 장소를 점검하고 그 결과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1. 사업계획의 변경
2. 대여약관의 변경
3. 시설의 개선과 변경

제29조(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자의 준수사항) ①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자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행 중에 발생한 피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제23조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자는 대여사업용 개인형 이동장치가 거치제한구역에 무단으로 방치되지 아니하도록 국토교통부령에 따라 지체 없이 조치하여야 한다.

③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자는 영업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한 때에 제출하였던 개인형 이동장치의 명세에 포함되지 아니한 개인형 이동장치를 영업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자는 대여사업을 운영하는 동안에 주사무소 또는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 이용자 현황 및 기타 국토교통부령에 따라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경우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자는 대여사업용 개인형 이동장치를 대여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형 이

동장치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1. 16세 미만의 아동

2. 약물의 영향과 그 밖의 사유로 이용자가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제21조를 위반하여 개인형 이동장치가 안전요건을 만족하지 아니한 경우

⑥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자는 개인형 이동장치를 대여할 때 임대차계약서상의 이용자에 대하여 운전자격을 확인하고, 해당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형 이동장치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도로교통법」 제80조제1항에 따라 시·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

2. 대여하는 개인형 이동장치가 임대차계약서상의 이용자가 보유한 운전면허의 범위(「도로교통법」 제80조제2항에 따른 운전면허의 범위를 말한다)에 따라 운전할 수 있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종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제6항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운전자격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시스템(이하 “운전자격확인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하여야 하고,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자가 해당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⑧ 국토교통부장관은 운전자격확인시스템의 구축·운영을 위하여

경찰청장에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제6항 각 호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관한 정보의 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경찰청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30조(대여사업자의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시설 설치)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자는 관할 경찰관서의 장과 협의하여 개인형 이동장치 거치구역, 거치장치 및 충전소 등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31조(국·공유지 사용료등 감면) ①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자가 제2항에 따른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시설을 「국유재산법」 제5조에 따른 국유재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조에 따른 공유재산,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하천법」 제2조에 따른 하천 및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유수면(이하 “국·공유지”라 한다)에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설치한 경우에는 그 사용료, 대부료 또는 점용료(이하 이 조에서 “사용료등”이라 한다)을 면제 또는 감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국·공유지의 사용료등의 감면대상이 되는 시설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자가 공동으로 이용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개인형 이동장치 거치구역
2. 개인형 이동장치 거치장치

3. 개인형 이동장치 충전소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시설

제5장 보칙

제32조(등록취소 등) ①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도록 명하거나 사업계획 변경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제3호 및 제10호의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제24조에 따른 사업계획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4조에 따른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을 등록한 경우
3.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자가 제2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법인의 임원 중 그 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로서 3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교체임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제25조에 따라 등록한 운영지역·운영대수·운영계획 등을 위반하여 사업을 한 경우
5. 제25조에 따른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의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다만, 3개월 이내에 그 기준을 충족시킨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제26조를 위반하여 안전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한 개인형 이동장치를 대여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7. 제27조를 위반하여 대여약관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약관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8. 제28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9. 제29조제1항·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0. 이 조에 따른 사업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사업정지 기간 중 사업운동을 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처분의 기준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3조(청문) 시·도지사는 제32조에 따른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사업을 정지하게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34조(과징금) ① 시·도지사는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자가 제3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사업정지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 사업정지 처분이 그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사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2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다만, 제32조제1항제6호·제8호·제9호 및 제1

0호의 경우에는 사업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액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자가 과징금을 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는 경우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제6장 벌칙

제35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4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 사업을 경영한 자
2.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24조제1항에 따른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을 등록한 자
3. 제32조제1항에 따른 사업정지 기간 중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을 경영한 자

② 제27조제1항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대여약관을 정하여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지 않거나 변경된 대여약관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도록 개인형 이동장치를 개조한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6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5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7조(과태료) ① 제20조제2항을 위반하여 16세 미만인 아동이 도로에서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행하게 한 보호자 및 제29조제2항을 위반하여 개인형 이동장치를 거치제한구역에 무단 방치한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20조제1항 각 호를 위반했거나 제21조제3항을 위반하여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한 개인형 이동장치를 「도로교통법」 제2조제1호 각 목의 도로 및 개인형 이동장치 도로에서 운행한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까지는 제24조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을 할 수 있다.